

심사보고서

○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92
----------	-----

2016.11.30.(수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1월 23일

(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이차영)

가. 제안이유

○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자 및 부과 기준 신설에 따라 조례의 중복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(안 제23조) 삭제

○ 상위법령 과태료 부과 및 부과기준 신설에 따라 해당조항 삭제

3. 검토보고 요지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오성일)

- ‘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상위법인 「소비자기본법」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및 부과기준 신설에 따라 조례에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장(제23조)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8장 벌칙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<p><u>제23조 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과태료는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·징수하며, 필요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소비자기본법

제86조(과태료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1.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
2.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
3.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등의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
4.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·출입을 거부·방해·기피한 자,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물품·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가 부과·징수한다.

□ 소비자기본법 시행령

제6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